

법제위원회 실행위원회 회의록

☐ 일시: 2004년 3월 5일(금) 오후 9시

☐ 장소: 여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참여자: 박종운, 김광이, 안선영, 이희정, 김철환, 이인영(기록) 이상 실행위원 6명. 이외는 참관인. 기명 생략

☐ 안건

1. 올 1년 전체 일정에 대한 논의
2. 초안 정리 작업 일정 및 방법에 대한 논의
3. 서울대 논문에 대한 논의
4. 관련 동향에 대한 논의
5. 차 회 회의일정

※ 실제 회의진행은 이와 달랐으나 논의내용을 정리한 결과 이와 같이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정리함

☐ 논의내용

1. 일정에 대한 논의

※ 참고자료: 2004년 사업기획 확정(2004 집행위원회에서 위임)

☐ 상집위(집행위) 의결 일정 공유

☐ 상집위에서 논의된 일정 중 법제위 해당 일정 공유

- 3월 중 법 초안 작성
- 3월 말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법안 심의
- 4월 말(또는 5월 초) 2박3일 집중적인 공개워크숍 개최
- 5월 말(또는 6월 초) 최종법안 및 해설서
- 6 - 8월 지역 법안공청회
- 9월 입법청원

☐ 법제위원장(박종운)의 일정안(카페에 올린 글 참조)

- 개인적 바램은 총선 전까지 초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집위에서 논의된 안이므로 우리 법제위의 역할은 3월말 상집위에 법제위초안을 넘기는 것까지라고 판단됨.

- 일본DPI의 장차법안을 받았을 때부터 장차법 해설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법제정위원회의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왔음. 마침 서울대 공익법센터에서 연구용역을 받은 것이 있음. 우리나라 장애인차별현실 -> 이에 대응한 장애인 운동 -> 실정법 체계의 한계 -> 그 대안으로서 장차법을 연구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음

- 3/13 법제정위원회 전체모임 및 권리구제팀 법안소위
- 3/15-20 법 초안 정리작업
- 3/27 상집위 법안 심의
- 4월 초까지 장추련에 참여하는 전체 단체에 서면으로 의견 요청
- 워크숍 및 전체 집행위 심의, 지역 공청회 등 홍보작업
- 5월말까지는 서울대 공익법 센터 논문 완성, 비슷한 시기에 6월 초까지는 법안 해설서 완성
- 9월까지 입법청원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최근 인권위와 노동부(고용차별)가 별도 법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때쯤 본격적으로 싸움이 있어야 하기에 적어도 그 시기까지는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2. 초안 정리 작업 일정 및 방법에 대한 논의

○ 초안 정리 작업의 일정 및 방식

- 당초 ×박×일 엠티를 계획했지만 사실상 무리일 듯하며, 그 보다는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에 걸쳐 매일 7시 30분 - 10시까지 진행하는 안 제안(박종운). 만약 2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밤을 새워서라도 완결하는 것으로 함

○ 참여자에 대한 논의

- 반드시 참여해야 할 사람은 실행위원회 + 각 분야 발제자. 실행위 8명은 기본으로 하며, 안을 낸 사람은 책임감이 부여됨(그 분야의 관여 및 정리는 ○○○가 했음을 분명히 함)

- 실행위원 외 법제소위원회이나 그 외 참관인의 참여는, 이번 정리 작업이 단순히 그동안 논의했던 것을 정리하는 수준이고 장추련 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후 상집위 심의, 참여 단체의견 수렴, 인터넷을 통한 수렴, 워크숍 등의 몇 차례의 의견 개진 과정이 있으므로, 개인적 욕구는 이해되어야 하지만 참여자에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의 보완과 논의의 집중성을 위해 15 - 20일 정리작업에 참여인원을 제한하도록 함

- 3개월 동안 장기간 함께 논의해온 당사자도 있으며, 그동안 참여가 어려웠던 까닭에 법안 정리작업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키려는 사람도 있지만 논의가 재차 반복을 거듭할 경우 예정된 일정 내에 법안 정리작업을 마치기 어려움. 또한 이번 정리작업은 현재까지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칠 것임

○ 논의순서

- 3/15 첫 모임에서 결정하되, 차별 영역, 총칙, 기구...순으로 논의하는 안이 제안됨

○ 15일부터 집중논의를 위해서라도 늦어도 12일까지는 그 동안 논의되었던 것을 반영한 수정안, 논쟁점 등을 미리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며, 팀장들이 체크할 것. 장소 - 15일은 일단 한우리교회에서, 이후에는 참여자들에게 유리한 곳으로 장소를 잡도록 함

3. 서울대 논문에 대한 안 (제목: 장애인차별과 법의 지배)

○ 목차에 대한 논의

- 장애인차별의 현황, 차별에 대응한 장애인 운동, 실정법 체계 하에서 장애인 차별의 방지 및 구제의 한계, 대안을 목차로 할 예정(박종운)

○ 참여자 - 유동철, 이인영, 안선영, 박종운 4인 안.

- 이외에 여성팀 김광이 추천(여성팀장, 법제위부위원장 자격)

- 내용은 기존에 장추련에서 논의되어왔던 것을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생각

- 대외적으로 법제위원회가 하는 것은 아니라도 내부적으로 부위원장까지는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이인영)

- 추후 논의

4. 관련 동향에 대한 논의

○ 보건복지부 장차법 연구자와의 간담회에 대한 논의(김광이 보고)

- 보건복지부가 3월 12일쯤 비공식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을 해왔다고 함

- 상집위의 분위기는 아직 우리 초안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장차법에 대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와 파트너쉽을 가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

- 복지부 간담회 제안은 우리의 안을 상세하게 보여 달라는 것은 아님. 다만 장애인단체의 안과 너무 상이하게 될 것이 염려가 되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방향에 대한 논의 정도임. 특히 노동부의 법 제정 때문에 복지부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에 불과하므로 상집위가 염려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박종운)

○ 노동부 고용차별관련 법제 마련 움직임에 대한 논의(보고)

- 연내에 노동관련법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 장차법이 나온 다음에 노동관련법이 나와야 한다고 상집위에서 논의
- 3월 말쯤 초안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어느 부서든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PR을 해야 할 것이며,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작업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것일 수 있음.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는 교육과 고용이 절반인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고용문제를 노동부가 100%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관철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음

- 우리 의견이 관철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처음부터 노동부는 우리를 배제해왔으므로 좋은지 나쁜지는 안이 나와 봐야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420행사관련 보고

- 420 행사는 420차별철폐에 장추련도 모두 하나로 가자는 안이 주 흐름임
- 420 연대체 안에 장추련이 참여하고, 공동대표를 파견하는 것으로 논의 중
- 420 차별철폐는 천막농성을 벌이는 것으로 함. 방식의 문제는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결
- 개별 참여 여부는 각 단체에게 의견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일부에서는 법안 공개워크숍을 20일 전후에 하자는 안이 있으나 그때까지 장추련 안이라고 내놓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었음

○ 기타 의견

- 3월 27일쯤 상집위에서 법 초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너무 세세하게 보는 것은 무리라고 언급함(김광이)
- 실제 언론을 타려면 장애인주간에 해야 함

5. 차 회 회의일정

○ 13일(토) 오후2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차 법제정위원회-오늘 논의된 안을 갖고 세부적으로 논의함

2차 권리구제 세미나

3차 뒷풀이-여성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일일호프 → 발산역